

高靈 梅村洞約의 특징과 洞民의 결속

우 인 수*

차례

1. 머리말
2. 매촌리와 고창 오씨
3. 매촌동약의 성격과 특징
4. 동민 결속의 한 사례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세기 초 경상도 고령의 매촌리에서 실시된 매촌동약을 분석한 글이다. 동약을 주도한 매촌리의 양반인 고창 오씨들은 몰락한 북인의 후예였다. 선조말 광해군대 북인정권의 핵심으로 정계 진출한 오여은과 익환 부자가 인조반정으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되면서 이 가문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그 후손들 중 일부가 고령의 매촌리로 들어와 황폐한 땅을 개간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자중하면서 차츰 힘을 길러 동약까지 만들어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고창 오씨 종가에 보관되어 있는 매촌동약은 고령 현감 한광선의 서문, 오경정의 서문, 30개 조항의 동약 절목, 그리고 '梅坪船突記事'로 구성되어 있다.

동약의 내용은 공동 기금의 마련과 관리, 동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들어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부세의 공동납과 관련한 조항과 환난에 대한 상호 부조 조항이다. 특히 초상과 관련한 조항은 모두 8개 조항에 달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비해 교화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소략하였다. 이는 하층민의 성장과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저항에 기인한 것으로 18세기 이후 동약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동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동약을 주도한 주인공인 오경정은 ‘船突’을 만들어 매평들을 살리는 작은 토목 공사를 완성시켰다. 돌로 바닥을 다진 인공 도랑을 새로 개설함으로써 장마시 계곡물을 급속히 들판 외곽의 하천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들판을 계곡물의 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개가를 올렸던 것이다. 이는 그가 주도하여 만든 동약을 통한 주민의 결속의 결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매촌동약은 양반들의 일방적 통제나 지배가 어려운 당시 향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향촌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양반들의 치열한 노력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고령, 동약, 매촌동약, 오경정, 船突, 배도랑, 인공 도랑

1. 머리말

고령의 매촌동약에 대해서는 향토사학자 김도윤이 1978년에 발굴하여 1992년에 학계에 원문을 소개하였는데, 이때 매촌동약에 대해서는 간단한 소개를 덧붙인 바 있다.¹⁾ 그 후 고령문화원에서 매촌동약을 번역하고 활자화한 원문과 영인한 원문을 첨가하여 1996년에 작은 책자로 펴낸바 있다.²⁾

하지만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촌동약이 아직까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바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매촌동약은 18-19세기 동약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동약에는 없는 중요한 속

1) 김도윤, 「매촌동계 소고」, 『향토사연구』 4, 1992.

2) 고령문화원, 『매촌동약』, 도서출판 대일, 1996.

성도 가지고 있어 당시 동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

지금까지 18-19세기 동약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전 시기와의 차이점을 밝혀 조선 사회의 발전 내지 변화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향촌사회의 권력구조나 통제체제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³⁾ 공동납과 같은 수취체제의 변화와 결부한 연구,⁴⁾ 촌락이나 촌락민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연구⁵⁾ 등이 대표적인 연구 경향이었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18-19세기 향촌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명하고자 한 부분이 문제 제기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고, 또한 구체적 자료로서 충분히 논증되었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는 더 많은 자료의 수집과 사례의 보완이 여전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가 동약 조항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그를 통한 향촌사회의 변화 모습의 파악에 머물렀지 동약의 실시로 나타난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된 예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매촌동약의 경우는 매촌동민들의 결속에 힘입어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을 중재하면서 만성 수재에 시달리던 마을 주변 농토를 한달여에 걸친 공사 끝에 옥토로 만드는 구체적 결실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동

-
- 3) 정진영, 「조선후기 향약의 일고찰-부인동 동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3, 1982.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구조의 변동」, 『변태섭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김용덕, 「동계고」, 『이병도 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1987.
 윤여현, 「공주지방의 동계에 관한 연구-부진동계를 중심으로-」, 『백제문화』 18·19, 1989.
 정진영, 「18·19세기 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대구 부인동 동약의 분쟁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이규대, 「19세기의 동계와 동역」,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임선빈, 「조선후기 동계조직과 촌락사회의 변화-공주 부진대동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0, 1993.
- 4) 김용섭, 「조선후기의 대구 부인동동약과 사회문제」, 『동방학지』 46·47·48, 1984.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통제책의 위기-동계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58, 1984.
- 5)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약 연구와 차별화할 수 있는 동약의 성공사례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도 매촌동약은 분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매촌동약이 시행된 공간이 매촌리와 그곳에 살면서 동약을 실시한 주체세력인 고창오씨들에 대해 먼저 살펴봄으로써 이후 논지 전개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매촌동약의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그 성격과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약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는 물길을 돌린 토목 사업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매촌동약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2. 매촌리와 고창 오씨

매촌리는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 소재하고 있다. 19세기초 매촌동약이 실시될 당시에는 경상도 고령현 하동면 매촌리였다. 고령 읍치에서 남쪽으로 약 20리 정도 떨어져있었으며, 합천군과 경계하고 있었다. 동약이 실시된 시기 전후의 고령의 면리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760~1765년(영조 36~41)에 편찬된 『輿地圖書』에 실려있는 『고령읍지』에 의하면 고령은 총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⁶⁾ 즉 읍내면, 구음면, 송천면, 구곡면, 안림면, 일량촌면, 하이면, 고곡면, 하동면, 상동면, 관동면, 내곡면 등이다.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戶口總數』에 의하면 고령현은 4면 즉 동면, 남면, 서면, 북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형상 큰 변화가 있었던 듯이 보인다.⁷⁾ 그러나 자세히 보면 면과 리 사이에坊

6) 『輿地圖書』 하, 경상도 고령현, 방리조(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3).

7) 『戶口總數』 제 8책, 경상도, 고령(규장각 영인본, 1996).

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방은 종래의 면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래의 면을 방으로 이름을 바꾸고, 몇 개의 방을 묶어 면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다만 종래는 면 수가 12개였지만 방 수는 14개로 되어 2개 단위 구역이 더 늘었는데, 우촌방과 유천방이 그것이다. 방위명을 면의 구획은 오래가지 못한 듯 1832년(순조 32)에 편찬된 『고령읍지』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환원되었다. 그리하여 총 14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전의 방의 이름과 모두 일치하고 있다.⁸⁾ 즉 읍내면, 구음면, 송천면, 곡곡면, 우촌면, 하이면, 일량면, 안림면, 유천면, 하동면, 상동면, 곡곡면, 내곡면, 관동면 등이다. 결국 12개 면이 4면 14방으로 바뀌었다가 14면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촌리는 하동면에 속해 있었다. 하동면은 7개 리로 구성되었는데, 구생원리, 매촌리, 하가야리, 상가야리, 송림리, 산당리, 초곡리 등이다. 이 7개 리는 정조대의 서면 하동방에 편재되었을 때나 그 전후의 하동면에 편재되었을 때나 변한 것은 없다.

매촌리는 마을 북쪽에 安林川이 흐르고 있고, 마을 남쪽에는 魯泰山에서 동북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 끝이 놓여 있었다. 안림천은 大加川과 합류하여 會川을 이루어 남류하다가 洛東江으로 흘러들어간다. 그 안림천과 산지 사이에 위치한 들판이 매호들인데, 안림천의 오랫동안의 퇴적 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친 들판을 개간한 것이었다.⁹⁾ 산자락에는 오후 일찍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고창오씨의 상당수는 부득이 개간한 들판 한 가운데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 남쪽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매호들을 가로 질러 안림천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마을에서는 이 계곡물과 안림천을

8) 『고령읍지』, 1832년, 방리조(『읍지(경상도①)』 제17책,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2).

9) 원래 용담천변의 거친 땅을 개간하였으므로 매가리라 하였는데, 음이 변하여 매촌이라 하였고, 또 마을 중심에 매화꽃 모양의 바위와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매호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고령군, 『고령군지』, 1996, p.1246).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매촌리를 지도에서 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안림천과 매촌리. 오른쪽에 회천과 낙동강이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옛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1920년에 대홍수로 인해 안림천이 범람하면서 들판과 마을의 일부를 휩쓸었던 것이다. 이 때 안림천은 수로를 변경하기에 이르러 들과 마을이 하천 바닥이 되고, 옛 하천 부지가 오히려 땅으로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들판 가운데 있던 마을이 하천에 유실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천 건너편의 송림리로 대거 이주하였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옛 수로를 추정하여 복원한 후에야 매촌리의 옛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안림천과 매촌리 주변의 지도 위에 1920년 이전 안림천의 옛 수로를 추정하여 복원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안립천 옛수로의 추정 모습. 1920년 안립천의 수로 변경으로 매촌리의 일부가 유실되었다.

고창 오씨가 경상도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오운의 증조인 석복이 함안에 퇴거하면서 함안을 근거지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다. 경상도로 이주한 고창 오씨는 吳灑－汝櫛－益煥으로 이어지는 선조에서 광해군대에 걸친 시기가 가장 전성기였다. 오운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여은·여벌·여영이 그들이다. 그 중 둘째인 여벌은 백부인 潛의 양자로 들어갔다. 여은은 益煥과 益煥 형제를 두었는데, 익엽은 다시 여벌의 양자로 들어갔다. 여영은 益陰·益燿 등 다섯 아들을 두었다. 그들 중 오운을 위시하여 여은·여벌 형제와 익환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감으로써 집권 세력의 한 축으로서 번성한 때를 보내었다. 이상의 고창오씨의 계보를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주세붕의 손녀를 첫부인으로 맞았으며, 고령의 유력 재지사족인 朴廷琬의 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았다. 1602년(선조 35)에 상소를 올릴 때는 의령의 진사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령에 거주한 듯한데,¹¹⁾ 1613년(광해군 5) 문과에 급제할 당시 거주지가 고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¹²⁾ 그 무렵 처가를 따라 고령에 이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후 그의 직계손들도 고령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42세이던 1602년(선조 35)에 서인 이귀로부터 비난을 받는 정인홍을 위해 장문의 상소를 올려 옹호한 바 있었다.¹³⁾ 그 후 그는 정인홍의 손자를 사위로 맞았다. 그런 정치적 인맥으로 인해 광해군대에 진사의 신분으로 관계에 진출하여 중 7품 직장을 역임하였고, 또한 53세에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⁴⁾ 급제한 이후에는 삼사의 관직을 두루 거쳐 광해군 8년에는 이조정랑도 역임하였다.¹⁵⁾ 서인에 의한 인조반정이 일어나 대북세력이 몰락하였을 때 그는 '이이첨의 심복인 동시에 정인홍의 수족'으로 지목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다.¹⁶⁾ 그 후 인조 11년에 귀양에서 풀려 방환되었으나,¹⁷⁾ 몇 달 뒤 세상을 떠났다.¹⁸⁾

오윤의 둘째아들 여별[1579년(선조 12)~1635년(인조 13)]은 23세이던 1601년(선조 34)에 진사가 되었고, 이어 25세이던 1603년(선조 36)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에 이르렀는데, 문과에 급제할 당시 거주지는 영주로 되어 있다.¹⁹⁾ 그는 김성일의 손서가 되었으며, 대사간 권태일의 딸을

10) 『국조문과방목』 1, 광해군 5년 癸丑增廣榜, 오여은(대학사 영인본, 1984, p.648). 오여은의 이름 자 '穰'은 사료에 간혹 '穰'으로 오기되기도 하였다.

11) 『선조실록』 154, 35년 9월 25일 갑신.

12) 『국조문과방목』 1, 광해군 5년 癸丑增廣榜, 오여은.

13) 『선조실록』 154, 35년 9월 25일 갑신.

14) 그의 문과 합격에는 대북의 실력자 이이첨이 정인홍의 문인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나 있다(『광해군일기』 79, 6년 6월 20일 신축).

15) 『광해군일기』 99, 8년 1월 14일 을유.

16) 『인조실록』 1, 1년 4월 29일 무자.

17) 『인조실록』 28, 11년 5월 16일 정미.

18) 『고창오씨세보』 오여은(뿌리문화사, 2001).

며느리로 맞았다. 인조반정으로 형 여은과 조카 익환이 유배를 갈 때도 유배를 가지 않고 계속 사환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인의 대학자인 정구와 류성룡의 문인이었고, 김성일의 손서였다는 점이 그의 신원보증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인조 13년 수령으로 있던 창원 임소에서 세상을 떠났다.²⁰⁾

오여은의 아들 익환[1594년(선조 27)~1645년(인조 23)]은 22세이던 1615년(광해군 7) 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이 홍문관 수찬에 이르렀다.²¹⁾ 문과급제 당시 거주지는 고령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 여은을 따라 고령으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예문관·홍문관·사간원의 청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대북세력의 집권에 참여하였다. 1623년 30세에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이첨의 심복'으로 지목되어²²⁾ 아버지와 함께 피화하여 종성으로 유배되었다. 17년이 지난 1639년(인조 17) 46세의 나이에 방환되어 고령으로 돌아왔다.²³⁾

이상과 같이 오여은·익환 부자는 광해군대에 대북으로 활동하다가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귀양을 가게 됨으로써 가문이 한 순간에 크게 기울어졌다. 그 직계 후손들은 관로의 길이 완전히 차단된 채 소과에 급제한 자도 없는 상태로 겨우 양반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해갈 뿐이었다. 익환의 증손인 尙源이 그나마 대소과의 향시에 수차 합격한 적은 있으나 소과 급제는 못한 채 아들도 없이 44세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양자로 들어온 后稷은 고령박씨인 처가를 따라 비로소 매촌리로 이거하였으나 26세로 세상을 뜬으로써 가문이 일어날 기회를 잡기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었다. 익환의 5대손인

19) 『국조문과방목』 1, 선조 36년 癸卯式年榜, 오여별.

20) 『고창오씨세보』 오여별.

21) 『국조문과방목』 1, 광해군 7년 乙卯式年榜, 오익환.

22) 『인조실록』 1, 1년 3월 15일 을사.

23) 『인조실록』 38, 17년 5월 4일 경신.

현충이 무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낸 것이 거의 유일한 관계 진출이었다.

이 가문에서 그나마 화를 피한 것은 오운의 셋째 아들 여영계였다. 여영은 여느 형제와는 달리 출사하지도 않고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직계 후손 중에서는 비록 대과 급제자는 없었지만 생원은 4명이나 배출하면서 양반으로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었다. 여영의 아들 益焯[1608(광해군 즉위)~1670(현종 11)]이 중년인 17세기 중엽에 영주에서 고령 매촌리로 이주하면서²⁴⁾ 그 후손들은 이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익전의 아들인 禧基는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공이 있어 숙종 33년(1707)에 창건된 梅林祠에 향사되었다.²⁵⁾ 매립사는 오선기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이 때 매촌리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월막리에 거주한 효종대의 생원 현풍 곽씨 郭壽岡(1619~1660)을²⁶⁾ 병향하였다. 곧 이 지역의 고창 오씨와 현풍 곽씨가 합작하여 세운 사당인 셈이다. 이 시기가 비록 문중 단위로 경쟁적으로 서원이나 사우를 남설하던 시기이기는 하였으나, 그 아들인 壽奎와 손자 聖賚가 연이어 생원에 급제하면서 이 지역이나 가문의 중심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수규의 고손자인 慶觀과 현손인 應雲도 생원이 되어 가문의 맥을 이었다.

매촌동약을 주도한 吳慶鼎은 바로 경관의 동생으로 오형제 중의 둘째였다. 오경정이 매촌리의 오씨의 중심인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선조들의 역량이나 형제들의 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하겠다. 거기에 보태어 그는 오운의 주손인 15촌 족속 顯敞의 양자가 되었다. 매촌리에 이거한 후

24) 『고창오씨세보』 오익전.

25) 매립사는 안림천 건너편인 송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26) 곽수강은 고령사람으로 16세에 '天人感應說'을 지었고, 36세에 생원이 되어 성균관에 서 학업을 닦으면서 '眞儒'라는 칭송을 받기도 하였으나 42세에 대과 응시를 앞두고 사망하였다.

침의 손자로 간 것이다. 이로써 그는 오운의 주손으로서의 지위를 잇게 됨으로써 고령의 오씨 가문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오경정이 매촌 동약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위와 같은 가문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창 오씨의 고령에서의 위상 변화는 고령읍지 인물조의 등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1760년경 영조대에 편찬된 『輿地圖書』에 실려있는 『고령읍지』의 인물조에는 고창 오씨는 한 명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²⁷⁾ 그러다가 70년이 경과한 1832년(순조 32)의 『고령읍지』에는 오선기 한 명이 등재되었다. 지극한 효성의 내용과 『小學釋義』의 저술, 그리고 매립사의 배향 등이 특기되어 있다.²⁸⁾ 60년이 지난 1895년(고종 32) 『고령읍지』 인물조에는 무려 7명을 등재시키고 있다. 이때는 물론 인물 선정의 기준이 진사나 생원으로 대폭 완화된 듯 인물조 자체에 등재된 규모가 전시기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기는 하다. 이 때 인물조에 등재된 고창 오씨는 앞의 오선기를 비롯하여 진사 오익엽, 생원 오수규, 생원 오성뢰, 군수 오현충, 생원 오경관, 생원 오응운 등 7명이었다.²⁹⁾

이로써 본다면 고령에 정착한 직후인 17세기초 광해군대에 한 때 번성하였다가 인조반정으로 가문이 몰락한 후 쇠락의 길을 걸어 18세기 중엽까지 고령 사회를 주도하는 양반가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가문을 일으키려는 피나는 노력으로 소과 급제자 몇 명을 배출하기 시작하였고, 이 힘을 바탕으로 오선기를 모시는 매립사를 건립할 수 있었다. 이를 구심처로 하여 결속한 이 가문이 비로소 고령 사회에서 인정받아 19세기 초엽에 출간된 읍지의 인물조에 오선기 한 명을 등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27) 『여지도서』하, 경상도 고령.

28) 『읍지(경상도①)』 제 17책, 고령, 1982(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9) 『읍지(경상도②)』 제 15책, 고령, 1982(아세아문화사 영인본).

이후 읍지 인물조에 등재 조건이 확장되면서 7명을 대거 등재함으로써 명실 공히 고령지역의 유력 가문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한편 매촌에 뿌리를 내린 고창 오씨들의 경제적 기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그들의 향촌에서의 영향력을 가늠해보는 한 요소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오운의 직계 후손들의 호구단자와 분재기가 다수 남아있어 토지와 노비의 소유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만의 선행 연구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의거하여 재산의 규모를 짐작하면 다음과 같다.

오경정의 8대조 오운의 경우 전답이 1,217마지기, 노비 78구 정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7대조 여운의 경우는 전답 393마지기, 노비 61구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대조 숙의 경우는 전답 약 440마지기, 노비 110구로 추정되었다. 조부 후침의 생모인 종증조모 허씨의 경우 전답이 145마지기, 노비 144구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버지 현창은 노비 110구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³⁰⁾

이상에서 볼 때 오경정 당대에도 수백 마지기의 전답과 100여구 이상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토지와 노비는 주로 고령을 위시하여 영주, 성주, 의령 등지에 분포되어 있었다.³¹⁾

30) 오씨 가문의 토지와 노비 소유의 상황은 아래 김용만의 논고 pp.83-96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김용만, 「오운 종가의 고문서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2007.

31) 매촌리의 호구 규모나 생산력 정도 그리고 신분적 구성 상황이 매촌동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밝히지 못하였다.

3. 매촌동약의 성격과 특징

매촌리는 고창 오씨들이 17세기 무렵부터 집성촌을 이루어 살던 곳이었다. 고창 오씨들은 광해군대의 집권세력이었던 대북의 핵심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인조반정 이후 몰락한 가문이었다. 인조대 이후 매촌리의 이 가문은 중앙의 사환은 고사하고 문과급제자 한 명 내지 못한 채 향촌에서 양반으로서의 명맥을 겨우 이어오던 집안이었다. 다만 약간의 학문적 명망을 가져 문중 사우에 배향할 만한 학자를 배출하거나 몇 명의 생원시 합격자를 배출하여 읍지의 인물조에 몇 명을 등재시킴으로써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매촌동약은 바로 정치적으로 크게 내세울 것 없던 양반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규약을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현달하지 않은 많은 양반 가문들이 자신들의 근거지인 향촌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는가를 살피는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매촌동약은 현재 고창 오씨 종가에 보존되어 있다.³²⁾ 동약은 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가로 30.5cm, 세로 33.0cm이며, 총 14장으로 되어 있다. 구성은 1822년의 한광선의 서문과 1805년의 오경정의 서문이 있고, 다음으로 1822년의 30개 조항의 동약 절목이 있고, 그 다음에 1824년의 '梅坪船突記事'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동약 절목이 있는 면에는 연한 붉은 색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글씨의 판독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선명하지 않다. 도장은 한 변이 6.4cm의 정사각형이다. 도장은 한 면당 두개씩 찍혀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면과 면 사이에는 간인으로 한개가 더 찍혀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절목의 번개를 막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절목의 내용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18세기 이후 대부분의 동계나

32) 본고에서 이용한 매촌동약은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에 있는 고창오씨 죽유종가에 보존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배려해 준 종손 오용원님에게 감사드린다.

동약은 官印이나 관의 題決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지적을³³⁾ 감안할 때 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오경정의 서문에는 매촌리의 동약이 1801년에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약 절목의 27번째 조목의 내용이 '추후에 조항을 가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초 동약이 만들어질 때인 1801년에는 27개 조까지 있었는데, 그 후 3개 조항이 추가되어 1822년에는 30개 조항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1801년에 매촌리를 대상으로 洞穀을 모우고 절목을 마련하여 동약을 시행하다가 1805년에 오경정이 서문을 썼고, 1822년에는 고령현감 한광선의 서문을 추가로 받았고, 이무렵 3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1824년 이후에 이를 모두 새롭게 정서하고 '매평선돌기사'까지 첨부하여 책자를 최종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매촌동약이 시행된 배경은 서문에 나타나 있다. 오경정의 서문에 의하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약 1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동약이 이 마을에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3개 동을 포괄하던 동약이 파기된 후 전통의 풍습이 허물어졌으며, 3개 동약의 주된 중심지였던 매촌리의 경우는 더욱 타격이 커서 조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정조년 간의 수재와 화재를 연이어 당하면서 더욱 참혹하게 되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상태를 좌시할 수 없어서 매촌리만이라도 동약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그 시행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³⁴⁾

3개 동에서 매촌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동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추정컨대 양반이 많고 규모가 큰 매촌리가 주된 동이 되고, 나머지 더 작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하층민들의 성장으로 인해 2개

33)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 한길사, 1998, p.423.

34) 『매촌동약』 오경정 서문.

동이 매촌리의 영향권 아래서 떨어져 나온 것을 상징해 볼 수 있다.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매촌리를 중심한 양반들의 영향력은 3개 동에서 매촌리 1개 동으로 더욱 축소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매촌동약은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층민들의 성장과 저항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수용하여 양반의 특권은 줄이고 하층민에 대한 배려는 더 늘인 선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이 매촌동약이 아닌가 생각한다.

1801년 신분에 따른 상하를 막론하고 등급을 나누어 곡식을 거두고, 또 연초를 팔아 돈을 마련하여 보태어 동의 공동 기금을 마련하였다고 그 사정을 밝히고 있다. 그 실시의 목적으로 내 건 것은 사람들의 병통을 구제하고, 초상을 도우는 것이라고 오경정은 1805년에 쓴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³⁵⁾

그런데 그는 이 동약의 권위와 신용을 높이기 위해 수령으로부터도 서문을 받았다. 1805년 자신이 서문을 쓰고 17년이 흐른 뒤인 1822년 고령현감 韓光善으로부터 서문을 또 받은 것이다.³⁶⁾ 한광선은 韓百謙의 후손이었다. 한백겸은 오운의 『동사찬요』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한 바 있고, 오운은 이를 수용하여 『동사찬요』를 수정하거나 추가한 바 있었다.³⁷⁾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집안 간에 교류가 있었던 듯한데, 오경정은 이를 인연으로 한백겸의 흔적이 남아있는 『동사찬요』를 가지고 수령 한광선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가지고 간 『매촌동약』에 대해 수령의 서문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한광선으로서도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이 결속을 위해 동약을 시행하겠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매촌동약에 수령의 서문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매촌동약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 이는 역설적으로 관의

35) 『매촌동약』 오경정 서문.

36) 『매촌동약』 한광선 서문.

37) 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2007, pp.38-39.

힘을 입지 않고서는 동약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의 흔적은 절목에도 보이는데, 동약의 절목 말미에는 1822년 관청의 누군가로부터 수결을 받고 있다. 이로 미루어 역시 관청의 권위를 빌리려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약의 절목 수는 총 30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0개 절목들은 일련 번호 없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으나 일목요연한 분석과 설명을 위해 일련 번호를 붙이고 이를 요목별로 재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매촌동약의 요목별 절목 내용

요목	조항	절목 내용
공동기금 마련과 관리	1조	상하 막론하고 조 15두~1두, 보리 1두로 洞穀 마련
	2조	부족하면 다음해에 다시 5두~1두 거두어 보충
	3조	동곡 관리는 하민 중에서 골라 맡길 것
	6조	동곡 빌리고 갚지 않는 자는 관에 고발
	12조	매 민호당 본조 10두 분급하여 월 이자 받아 동비에 보탬 것
	13조	동곡 사용처는 매월 동수에게 보고하여 낭비 줄일 것
	14조	타지 이주자에게는 본조 10두를 반드시 돌려받을 것
	15조	빌리고 도망간 자의 동곡 환수 방법
조직과 운영	4조	상임은 동수, 하임은 동유사 또는 동장
	5조	동회 일자는 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알릴 것
	24조	마을 우물과 숲은 공동 시설물로서 보호할 것
	26조	절목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동회에서 논죄할 것
	27조	조항 가감할 수 있다
부세의 공동납	7조	임의 부세 징수 금지
	9조	別進上과 別官納은 동곡에서 납부
	11조	출장 관리 내왕시 소요 비용 동곡에서 부담
	25조	부역 담당 奴를 못낸 집은 1년에 조 1두씩 납부
	28조	양반가의 仰役奴는 잡역에 동원하지 말 것
환난상환	8조	병이 심한 자는 동곡에서 부조
	17조	초상시 반드시 서로 돕되, 돕지 않는 자는 논죄
	18조	상가에 갈 때 藥席 한뇨 부조, 돕지 않으면 징계
	19조	상하 막론 1명의 장정을 내어 초상집 돕게

	20조	상여꾼에 대한 규정
	21조	초상시 軍餉米 4斗와 喪葬輻物 제공
	22조	신규 회원은 형편 따라 기금 내면 상장부조 대상으로
	23조	타지로 이주한 동민은 喪葬輻物만 이용 가능
	30조	喪輿 庫舍의 관리 규정
예속상교	10조	노인 공경
	16조	효도 화목 장유
과실상규	29조	술주정 교성방가 금지

먼저 공동 기금의 마련과 관리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 공동 기금인 동곡의 마련은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租의 경우 최고 15두로부터 1두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두어 거두고, 보리의 경우는 모두 1두씩 거두게 하였다. 모운 동곡은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 민호에게 10두씩을 분급해 준 다음 매년 이자를 받아 마을의 공동 운영비에 충당케 하였다. 공동 기금의 관리는 하민 중에서 골라서 맡도록 하여 하민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하층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어 타지 이주자 및 도망자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하여 공동기금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들이 있다. 상임은 洞首라 칭하였고, 하임은 洞有司 또는 洞長이라고 칭하였다. 동회의 통지는 동장의 몫이었다. 마을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보호와 절목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부세의 공동납과 관련한 조항들이 있다. 임의로 거두는 부세 징수를 금할 뿐 아니라 別進上과 別官納을 비롯하여 출장 관리의 내왕시 소요 비용을 마을의 공동기금에서 내도록 하였다. 18세기 이후 많은 동약의 기능 중의 하나가 공세의 대납이나 그 보조에 있었다는³⁸⁾ 점에서 매촌동약도 비슷한 모습을

38) 정진영, 앞의 「조선후기 향약의 일고찰—부인동동약을 중심으로—」; 김인걸, 앞의 「조선후기 향촌통제책의 위기—동계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부역을 담당할 奴를 내지 못한 집에서는 곡물로 납부케 하였다. 다만 양반가에 부속되어 있던 仰役奴의 경우 가호마다 부과하는 부역에 동원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 주목된다. 이 부분은 양반층의 특권을 강화한 것으로 일견 보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보호되던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반의 특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하던 당시 사정을 전해주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매촌리의 동인들이 점필재 김종직 중손가의 양역노에 대해 역을 부과키로 결정한 데 대해 그 부당성을 관청에 호소하여 시정케한 자료가 남아있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³⁹⁾

가장 자세한 것은 환난에 대한 상호 부조 조항이다. 환난상훈과 관련된 9개 조항 중에서 병에 걸린 자에 대한 구휼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조항이 모두 장례 부조와 관련한 것이다.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초상이 난 경우의 부조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는데, 공동납과 함께 일상적이고도 매우 현실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곡에서 일정한 부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집에 한 명씩 차출하여 돕도록 하였으며, 여러 가지 장례에 드는 물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점차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는 동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예속상교와 과실상규에 해당되는 조항들은 수도 줄어들면서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화와 관련한 내용도 매우 소략해진 것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 역시 18-19세기 동약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하층민의 성장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또한 매촌동약에는 서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데, 서열의 성장과 저항에 따라 그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규약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9) 『영남고문서집성』 I,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고흥 선산 김씨 가문 所志 및 完文, pp.139-141. 정진영, 앞의 책, pp.513-515.

이상의 내용 분석을 통해 볼 때 매촌동약은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의 동약과 공통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양반층이 주도하여 동약을 이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일방적이지는 않다. 이는 일방적 통제나 지배가 어려운 당시 향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양반들이 현실을 수용한 위에 향촌 사회에서의 우위 확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던 19세기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4. 동민 결속의 한 사례

매촌리 주변의 들판이 梅坪으로 표기된 매호들이다. 들판의 남쪽 산골짜기 梨峴⁴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도랑이 매평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골짜기 계곡의 물이 합수되어 급히 내려오면서 사토를 휩쓸고 내려와 도랑을 채우기 때문에 범람하기 일쑤였다. 이 도랑의 범람으로 인해 장차 매평들 전체가 황폐화되기 일보 직전이였다. 도랑의 사토를 제거해보았자 다시 채워지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⁴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오경정이 생각해낸 것이 '船突'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突'은 우리 말 도랑의 준말인 돌을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같은 글에 '泐突'이라는 표현이 있고, 장마철에 모든 '泐突'이 범람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에 연결된 도랑 즉 '보 도랑'을 뜻하는 것이 분명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船突'도 도랑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침 오경정은 '船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았다. "소위 '船突'이라고 하

40) 현지 주민들은 '배자' 또는 '배자재'라고 부른다. '배자'는 '배제'이고, 이를 한자로 '梨峴'으로 표기하였다고 본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집필재 김종직 종가가 있는 마을이 나온다.

41) 이하 '船突'과 관련한 서술은 『매촌동약』의 말미에 첨부된 「梅坪船突記事」에 의거하였다.

는 것은 도랑 바닥 위에 돌을 깔아 그 돌 위로 도랑을 개설함으로써 계곡물을 급속히 유도하여 매평들 바깥 하천으로 방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²⁾ 즉 ‘船突’은 돌로 도랑의 바닥 다지기를 한 도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이름은 ‘배 도랑’ 정도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⁴³⁾ 그리고 여기서 말한 매평들 바깥 하천은 안림천을 가리킨다.

이때 이현에서 내려오는 계곡 도랑의 물줄기를 완전히 돌리는 도랑을 새로 개설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존 도랑의 물줄기는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보조 도랑을 새로 만든다는 것인지는 이 문건 만으로는 확실치 않다. 짐작컨대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림 4> 이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계곡 도랑과 ‘船突’의 개설처를 추정한 그림

42) 『매촌동약』, 「梅坪船突記事」, “所謂船突者 突上蓋石 開突於其上 決導谷水 放出於野外 川上者也”. 단 여기서 ‘突上蓋石 開突於其上’을 ‘도랑 위에 두경돌을 덮고 그 위에 도랑을 개설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상 그런 형태의 도랑이 사토가 차서 범람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문구 중에 ‘川上’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突上’도 ‘도랑의 바닥 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43) 고려문화원에서 펴낸 매촌동약 번역본에도 ‘船突’을 ‘배도랑’으로 번역하고 있다. 고려문화원, 앞의 책, p.13.

그런데 문제는 '船突'을 인공적으로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두 집 소유의 논을 통과하여야 하는 점이였다. 이를 두 논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823년 봄에 마침내 의논이 정하여져서 논 주인이 공사를 허락하였으나,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쟁단이 일어나곤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 과정을 오경정이 중간에서 잘 중재하여 마침내 한 달간의 공사로 '船突'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 해 여름에 수재가 혹심하여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퍼부어서 주변의 洑 도랑이 성한 곳이 없을 지경이 되어 많은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배도랑이 설치된 매평은 이 인근에서 거의 유일하게 온전할 수 있어서 가을에 대풍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에 농부들이 서로 경하하기를 이것은 '船突'의 효험이라 하였다고 한다.

'船突'의 성공적인 완성에는 오경정의 중재능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동약을 통해 형성된 이 마을 사람들의 상호 신뢰와 결속력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오경정은 사람이 힘이 아니라 신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오경정은 다음 해인 1824년 봄에 장정을 내어 '船突'의 상하 좌우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중앙 부분에는 단을 쌓고 느티나무를 심어 오가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동민들의 양보와 결속력의 상징인 이곳을 매촌동약과 함께 후손들에게 길이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이 기념비적인 주민 결속의 성공 사례에 대한 전말을 매촌동약의 말미에 첨부하여 길이 전하게 하였던 것이다.

사실 '船突'의 개설과 매촌동약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입증해 주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매평들의 수재 해결이 이 마을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 '船突'의 개설과 매촌동약을 주도한 이가 모두 오경정이라는 점, '船突' 개설의 전말을 기록한 기사가 매촌동약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점, 오경정이

‘船突’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길이 이 사실을 동민들에게 전하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둘 사이의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이현의 골짜기와 계곡 도량은 남아있다. 하지만 ‘船突’이 개설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1920년 대홍수때 안림천이 범람하면서 휩쓸렸고, 그 후에는 물길을 바꾼 안림천의 하천부지가 된 바람에 흔적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농토였던 곳은 하천으로 변하였고, 하천이 흐르던 곳은 오히려 땅이 되었던 것이다. 이 때 매호들 가운데 있던 집들도 홍수에 휩쓸려 떠나려갔다. 이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안림천 건너편인 송림리로 이주하여 새롭게 마을을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죽유종택의 일부도 그 때 옮긴 것이다.

5. 맺음말

현재 고창 오씨 종가에 보관되어 있는 19세기 초의 매촌동약은 고령 현감 한광선의 서문, 오경정의 서문, 30개 조항의 동약 절목 그리고 ‘梅坪船突記事’로 구성되어 있다. 수령의 서문은 관청의 권위에 기대어 동약의 권위를 높이려한 모습으로 생각된다. 관과 결탁하는 모습은 18세기 이후 다른 동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었다.

이 동약을 주도한 고령 매촌리의 고창 오씨들은 몰락한 복인의 후예였다. 선조말 광해군대 복인정권의 핵심으로 정계 진출한 오여은·익환 부자가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귀양을 가게 되면서 이 가문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후 그 후손들 중 일부가 고령의 매촌리로 들어와 황폐한 땅을 개간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 곳에서 은인자중하면서 차츰 힘을 기르는 세

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인근 동네에 살던 현풍 곽씨와 연합하여 매립사를 지어 오선기를 향사함으로써 구심점을 만드는 기틀을 닦았다. 부단한 노력으로 문중 인물 한명을 마을의 사당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고령읍지 교원조에 매립사를, 그리고 인물조에 오선기 한 명을 등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동약까지 제정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약의 내용은 공동 기금의 마련과 관리, 동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부세의 공동납과 관련한 조항과 환난에 대한 상호 부조 조항이다. 특히 초상과 관련한 조항은 모두 8개 조항에 달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동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교화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소략해졌다. 이는 하층민의 성장과 저항에 기인한 것으로 18세기 이후 동약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서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데, 이 역시 서열의 성장과 저항에 따른 현상이었다고 판단된다.

때 마침 동약을 주도한 오경정은 '船突'을 만들어 매평들을 살리는 공사를 완성시켰다. 돌로 바닥을 다진 인공 도랑을 새로 개설함으로써 범람시 계곡물을 급속히 들관 외곽의 하천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들관을 계곡물의 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개가를 올렸던 것이다. 이로써 그는 그 권위를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그가 주도하여 만든 동약은 공사를 성공시킨 토대로써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토목 공사는 동약을 통한 동민의 결속력이 바탕이 된 성공 사례로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매촌동약은 양반들의 일방적 통제나 지배가 어려운 당시 향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향촌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양반들의 치열한 노력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국조문과방목』, 『사마방목』, 『호구총수』
『여지도서』, 『고령읍지』(1832년), 『고령읍지』(1871년), 『고령읍지』(1895년)
『고창오씨세보』, 뿌리문화사, 2001.
『만성대동보』, 명문당 영인본, 1983.
『매촌동약』, 고창 오씨 죽유종가 소장본.
고령문화원, 『매촌동약』, 도서출판 대일, 199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영남고문서집성』, 1992.
- 고령 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역락, 2007.
고령군, 『고령군지』, 1996.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김도윤, 「매촌동계 소고」, 『향토사연구』 4, 1992.
김용덕, 「동계고」, 『이병도 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1987.
김용만, 「오운 종가의 고문서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2007.
김용섭, 「조선후기의 대구 부인동동약과 사회문제」, 『동방학지』 46·47·48, 1984.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구조의 변동」, 『변태섭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통제책의 위기—동계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58, 1984.
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2007.
윤여현, 「공주지방의 동계에 관한 연구—부전동계를 중심으로—」, 『백제문화』 18·19, 1989.
이규대, 「19세기의 동계와 동역」,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임선빈, 「조선후기 동계조직과 촌락사회의 변화—공주 부전대동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0, 1993.
정진영, 「조선후기 향약의 일고찰—부인동 동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3,

1982.

정진영, 「18·19세기 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대구 부인동 동약의 분쟁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Abstract

Characteristics of Maechondongyak(梅村洞約) in Koryoung(高靈) and the Unity of its Residents

Woo, In-Soo

This article analyzed Maechondongyak(梅村洞約; regional regulations in Maechondong) which was practiced in Maechonlee(梅村里), Koryoung(高靈) in Kyongsang district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Ohs, aristocrat, descended from ruined Northern doctrinal faction was leading Dongyak(洞約; regional regulations). However, Oh Yeo-eun and his son, Oh Ik-hwan, who launched into politics as major power of the Northern doctrinal district in the reign of late king Seonjo and king Kyanghyegun, were banished because of king Injo's restoration. This event was a heavy blow to the Oh's. Since then, their part of descendants went to Maechonlee in Koryoung and settled there cultivating devastated land. Being prudent with less political activity the family recovered its power and they reached to make Dongyak and practiced it. Maechondongyak(regional regulations in Maechondong), currently stored in the Oh's head house, consists of preliminary remarks, 30 provisions, Maepyungseondolkisa(梅坪船突記事), a record about artificial ditch in Maepyung field.

The contents of Dongyak included basically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pool, th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it. Characteristic parts are articles about joint payment of taxation and mutual assistance when they went through hardship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mourning there are 8 articles in total and this shows how they laid emphasis on that part. Otherwise there were few clauses dealing with edification. This phenomenon reflects that power the lower classes hold was getting stronger. Considering that it was general tendency. This phase is quite important in that it gives clues that Dongyak was being changing more practical and directly helpful to people's life.

Oh Kyung-jung, a leader of Dongyak(regional regulations), made artificial ditch so as to complete small public works to save Maepyung field from

flooding, when it is a spell of rainy weather, it became safer that flooding water sent to a outer river in a plain by establishing an artificial ditch, paved its bed with stone. By this way, they built stacks preventing fields from being ruined from flooding. This is rated as a result of unions of inhabitants and it was based on Dongyak(regional regulations), leaded by Oh Kyung-jung.

In conclusion, Maechondongyak(regional regulations in Maechondong) reflected the reality which was hard for the nobility to control and govern residents with lopsided way. Also, we can see intense efforts of upper classes to achieve predominant position in country districts.

Key Word

Koryoung(高靈), Dongyak(洞約), Maechondongyak(梅村洞約 ; Regional regulations in Maechondong), Oh Kyung-jung, Seondol(船突), Baedorang, Artificial ditch

- 논문투고일 : 2007.12.12. 심사시작일 : 2008.01.17. 심사완료일 : 2008.01.27.